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1.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임기 만료에도 불구 국회의원 세비 등 이익과 직결됨

2. 전합 회부

가. 긍정적 요소

▣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보다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음**

나. 부정적 요소

▣ **[주문이 상고기각일 경우]**

● 헌재 결정과 차별성 있는 논리 구성이 쉽지 않음

- 헌재 결정 :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주된 이유로 의원직 상실결정 내림

o 위헌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취지와 그 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o 위헌정당 해산은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음

o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위헌정당해산 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나아가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됨

o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신분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으므로 그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 : 헌재 결정 취지와 사실상 동일함

> o 정당이 목적이나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사상이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계속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이나 **헌법수호의 목적** 달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 o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것은 헌법수호를 위하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면서도 당해 정당이 위헌정당임을 알면서 이를 부인하고 끝까지 당해 정당에 남아 있는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그 정당의 위헌적인 사상이나 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는 활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위헌정당을 해산한 목적이 무의미하게 된다.
> o 헌법과 법률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 당시 당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헌재 결정[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소속 국회의원도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맞지만, 의원직 상실 여부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귀속한다는 것임
  - 오직 사법부만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헌재 결정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 제기될 수 있음
  - 헌재 결정과는 다른 논리로 국회의원 직위 상실된다고 설시할 경우 비판의 강도는 약화될 수 있을 것이나 논리 구성이 여의치는 않음
- ⇨ 헌재 결정과 별 차이가 없는 논리 구조로 상고기각을 하면서 전합 판결을 내는 것은 전합 판결의 위상과 권위에도 부합하지 않음

▣ [주문이 파기환송일 경우]

- 기존에 검토한 바와 같이 본안 판단에 들어갈 경우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청구인용'임
- 파기환송 주문은 대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하여 헌재와 반대의 결론

을 내렸다는 의미인바, 그 자체로 파장 예상되고 파기환송 판결의 형식이 전합 판결이라면 파장은 더욱 클 것임

- 언론의 반응 역시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대법원-헌재 간 갈등을 주제로 양비론 입장의 기사 양산 예상됨

다. 검토

▣ **기념비적인 법리를 선언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전합 판결은 得보다 失이 많다는 의견임**

▣ **헌재 계속 중인 전합 판결 관련 사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 ⇨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할 것임**

3. 기타 고려사항

▣ **전합 회부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될 경우 ⇨ 퇴로가 없음**

● 현재 전합 회부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사건 중 일부는 소부 판결 선고로 종국되고 있음.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론 등의 문제 제기는 없는 상태임

● 이 사건의 경우 전합 회부 사실 자체로 다수 언론의 관심 유발할 것이고, 전합 선고를 전제로 예측 기사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사건의 산출물은 전합 판결이어야 함 **[끝]**